

스팸메일의 문제점과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of Spam mail and Efficient Countermeasure

한상암, 김정규*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Han Sang-Am, Kim Jyoung-Gyu*

Wonkwang Univ, Nambu Univ.*

요약

스팸메일이란 상대가 수신하기를 원치 않는 상업적인 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뜻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팸메일의 폐해는 매우 다양하며 그로 인한 손실액만도 2001년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86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2004년 국내의 경우는 2조 6451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스팸메일은 수신자와 ISP 그리고 사회적 나아가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보호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 법규만으로는 역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스팸메일이 민사상 불법은 되지만 형사법적인 불법으로까지 긍정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어 불법행위로 구성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형태의 전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스팸메일에 대한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Spam email is an electronic mail sent to a large number of netizen who do not want it. Criminals have been to take an advantage of this tool easily through harmful activities such as phishing. Recently the spam mail containing commercial information is broadly accepted as an illegal commitment to endangering the network. According some report, it could cause real damages. For the better policy on controlling spam mail we need new Efficient Countermeasure.

Several laws have been enacted in Korea for controlling spam mail. The most important acts is the Using and Protecting Communication Act. Main targets of this law is virus spreading, computer hacking, cyber pornography, intellectual property breaching, private or public information abusing and cyber terrorism. But the Using and Protecting Communication Act is insufficient to control spam mail. For the better policy on controlling spam mail we need new Efficient Countermeasure.

Therefore, this research wishes to present way to control for efficient spam mail through enactment of conversion, induction of clash action system degree, special law of national regulation form for spam mail.

I. 서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실제 생활에서만 가능했던 활동들이 인터넷 서비스들에 의해 대체돼 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우편은 과거의 우편형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준 정보화의 대표적인 편의도구이다. 전자우편이 등장한 초기에는 주로 사용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나 정보전달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역할에 비해 상업적인 목적달성 수단으로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다.

상업적인 광고성 전자우편인 이른바 스팸메일이 인터넷 환경에서 심각한 공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스팸메일은 수신자에게 음란한 화면을 통해 불쾌감을 유발하고 수신메일을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져다 줄 뿐

만 아니라 물질적 피해까지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피싱(Phishing)이라는 금융계정정보등의 개인정보 절도기법에도 스팸메일이 동원되고 있어 스팸메일로 발생하는 폐해는 증가일로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스팸메일의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의 전송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내지는 알권리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와 민사법 혹은 행정법적 불법성만이 인정되어 그간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스팸메일에 의한 불편함과 위험성의 증가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며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활동에 있어서의 스팸메일의

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현행 법규를 검토한 후 그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스팸메일의 개념

스팸메일은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광의의 스팸메일이란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정보를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달하는 전자우편을 말하고 협의의 스팸메일은 '상업적 광고를 목적으로 발송되는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는 전자우편물'을 의미한다[1]. 스팸메일이라는 용어는 Hormel Foods 회사에서 만든 햄 통조림을 소재로 한 미국의 Monty Python 코미디 시리즈 쇼에서 유래하게 된 것으로 인터넷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어원을 두고 있다[2]. 스팸메일과 유사한 용어로는 정크메일(junk mail)이나 벌크메일(bulk mail) 등이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대한 무차별적 전송광고물을 UCE(Unsolicited Commercial E-mail)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최근에 와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UCE란 UCE를 받은 수신자들이 그 발송자에 대해 더 이상 그러한 광고물을 보내지 말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전송된 UCE를 의미한다. 즉 좁은 의미의 UCE는 수신자에 의해 명확히 수신 거부된 UCE인 것이다[3].

III. 스팸메일의 문제점과 위험성

1. 스팸메일의 문제점

스팸메일에 문제점들은 그에 대한 직접적 피해로부터 간접 피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먼저 스팸메일은 그 방식과 내용의 무차별성으로 인해 수신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고 개인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침해시킨다. 또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도 직간접적인 손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1 수신자의 문제

수신자에게 있어서 스팸메일은 실제 투여되어야 할 학업이나 업무에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여 기회비용을 상실시키는 문제를 낳는다. 또한 스팸메일로 진정된 메일을 삭제시킴으로 인하여 다른 메일에 대한 수신을 방해하는 업무방해를 하게 된다. 더욱이 수신자의 메일용량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스팸메일로 메일용량이 초과하게 되어 실제로 수신자가 필요한 메일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사용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4].

구체적인 스팸메일의 수신자 피해로는 ① 흥미없는 메일 혹

은 불유쾌한 메일의 수신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② 불필요한 메일과 스팸메일을 선별하기 위한 시간적·심리적 피해 ③ 불필요한 메일로 인하여 서버나 PC의 장애 ④ 불필요한 메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적·금전적 피해 ⑤ 컴퓨터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시스템·데이터·응용프로그램의 사용 불능에 따른 손해 등이 있다[5].

1.2 ISP의 피해

송신자가 이메일을 발송하면 ISP는 이를 서버에 저장하는 단계를 거쳐 각 수신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도한 스팸메일은 ISP의 서버요량을 많이 차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ISP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스팸메일을 극복하기 위한 설비분야 투자, 스팸메일의 발송을 통제하기 위한 인력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력비용 등이 그러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우편 서비스가 무료로 이루어지고 대신 사업자는 광고 등을 유치하여 운영비용을 보상받는데, 스팸메일로 인하여 이용자 등의 탈퇴나 서비스의 질에 대해 광고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되면 광고수주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악순환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팸메일은 어느 한부분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6].

1.3 사회적 문제

스팸메일을 통해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전송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소년층은 다른 층보다도 사이버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다. 성에 대한 가치관이 미 정립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음란성 스팸메일에 대한 접촉은 잘못된 성의식을 고착시킬 수 있으며 그로인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일탈과 나아가 실생활의 성범죄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스팸메일의 폐해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4 국제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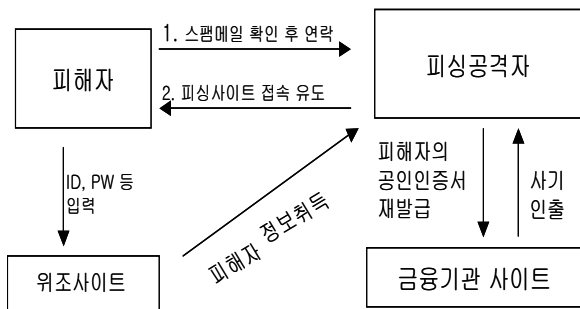
스팸메일 발송자는 수신자의 거주지나 국가 등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 수신자의 위치는 인터넷이 개통된 어느 국가나 송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누적된 스팸메일은 발신자 국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문제로 귀결된다[7]. 스팸메일로 인해 외국에서 특정 IP가 차단된다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특정 IP가 차단된다면 이를 통하여 유통되는 국제적인 정보의 흐름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정책을 마련이 시급하다.

2. 스팸메일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제고

2001년 유럽연합에서 집계한 스팸메일로 인한 전 세계적 피해액은 86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 하였고 미국은 스팸메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1천만 달러에서 8천7백만 달러라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한 리서치 회사는 동일한 조사를 통해 매년 2조 6451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피해액의 부분별 산정비용으로는 스팸메일 저장 비용 1조 4천 58억원(기본 메일 용량 10KB 추정), 스팸메일 삭제비용 1조 1천 7백 59억원(개인인건비 기준), 스팸메일 전송비용 6백 35억원(1인당 연평균 44시간)이었다[8].

그러나 아직 일반 시민들은 스팸메일에 대해 실질적으로 불편해하면서도 이를 불법적인 것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최근 KT 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스팸메일을 불법행위로 인식하는 정도는 26.6%였고 학부모의 경우는 20.6%로 나타났다. 이렇게 불법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54.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9]. 그러나 이는 스팸메일을 통한 해킹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나타난 응답결과일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최근 피싱이라는 신종 금융사기수법이 스팸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활동과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피싱은 유명기관을 사칭한 위장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 이메일 사용자에게 전송 후 위장된 홈페이지로 유인하여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 번호, 사용자 ID, PW 등 민감한 개인의 금융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DNS 하이재킹 등을 이용해 사용자를 위장 웹 사이트로 유인하여 개인 정보를 절도하는 피싱의 진화된 형태인 파밍(pharming)도 출현하고 있다[10]. 피싱공격자는 이용자의 중요정보수집을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을 속여서 규정된 보안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비 기술적 방법으로 침해를 시도한다. 또한 피싱은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데 피싱공격을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획득하여 개인 금융계좌에서 돈을 유출하여 개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시킨다. 그림[1]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피싱공격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 그림 1. 스팸메일을 통한 피싱공격 흐름도

피싱공격은 유명기관의 브랜드에 대한 고객 신뢰를 이용하여 유명기관의 웹사이트로 위장하면서 기업의 인지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11]. 피싱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스팸메일이 첫 단계가 된다는 점은 스팸메일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IV. 스팸메일 관련 법률과 불법구성의 문제점

1. 스팸메일관련 국내 법규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스팸메일에 대한 일반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법 제 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수신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방식은 ‘Opt-out’ 방식에 ‘Labeling’ 방식을 더한 형태이다. ‘Opt-out’ 방식은 수신거부 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광고성 이메일을 더 이상 보낼 수 없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1회의 광고성 이메일에 한해서는 적법한 것이 된다는 치명적인 법규상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ISP에게 스팸차단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광고문구표기 즉 ‘Labeling’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팸메일들은 다양한 변칙표기를 통해 보완한 법규망을 교묘하게 빠져나와 2002년 개정에서 신설된 수신거부방해금지등과 함께 시행령 23조 2 제2항에 관련하여 별표로서 그 명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전자우편수집출처,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2 기타 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23조에서는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14조 2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형법 제366조 제물손괴죄, 경우에 따라 형법 제347조 2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스팸머들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특별범우선의 원칙에 의할 때 관련 특별법이 우선 적용될 것이지 일반 형법상의 죄책을 물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12].

2. 스팸메일이 불법구성의 문제점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법률들은 대부분 형사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광고성 전자우편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광고성 전자우편은 대체로 민사법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상 불법은 인정하지만 형사법적인 불법은 긍정하기엔 아직 미흡한 면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13]. 또한 광고도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스팸메일을 일괄적으로 범죄화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제시한 대로 스팸메일이 분명 수신자 등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까지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스팸메일 자체를 두고 형사법적인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범죄행위를 수반한 전자우편과 음란성 광고 전송, 바이러스 유포를 위한 전자우편 전송, 금융사기성 광고 전자우편 전송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유형이라 할 것이다.

V.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방안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법제 하에서 스팸메일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스팸메일 발송에 대해 수신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ESP의 경우, 손해배상의 일반법인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통하여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법제도 하에서 스팸메일을 획기적으로 방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법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14].

1. 옵트인(Opt-in) 형태의 규제

옵트인(Opt-in) 방식은 광고전송자가 광고 수신에 대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광고 전송을 금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하여 발송하는 메일도 스팸메일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스팸메일의 요건을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해석상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한정되기 때문에 수신동의를 위해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광고 전송자가 광고를 수신하겠다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같이 수신자가 수신에 대한 거부의를 표시하였을 경우에 전송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옵트인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위협하게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자를 특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2.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악성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팸메일을 수신인 개개인이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실 손해액 자체가 미미하므로 오히려 비경제적이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15]

3.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

ESP 또는 사법기관에서 스팸메일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가입자에 대한 실명인증을 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명인증은 그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소수의 스팸메일 발송자의 추적을 위해서 실명인증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인인증서의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의 처리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약점이 있다.

4. 특별법 제정

지금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스팸메일에 대해 규제해 왔으나 정보통신망법보호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에 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스팸메일로 인한 수신자의 프라이버시나 경제적 비용의 침해를 적극적 보호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법률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특별법의 제정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16].

스팸메일에 대한 자율규제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Can-Spam Act of 2003 등 스팸메일 금지를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VI. 맺는 말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모든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메일은 사이버 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신을 원하지도 않는 이른바 스팸메일이라는 인터넷 공해로 말미암아 수신자, ISP 등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스팸메일을 통한 범죄행위의 연계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스팸메일의 위협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련 법규로는 스팸메일의 송신행위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팸메일의 유포인 방식의 규제방식 채택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실명인증과 공인인증제도 채택, 그리고 특별법의 제정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스팸메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향후 스팸메일로 야기 될 보다 심각한 폐단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여할 것이다.

끝으로 스팸메일을 범죄화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스팸메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현상과 스팸메일 전송자가 얻게 될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한 상업적 메일까지도 표현의 자유 범주로 포함시켜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진보해 나가야할 정보화 시대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 참고 문헌 ■

- [1] 윤용석, “스팸메일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p.7, 2002.
- [2] 박지현, “스팸메일에 대한 ‘Opt-in’ 규제방식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pp.126-127, 2004.
- [3] 정준우, “인터넷 광고의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인터넷법률 제5호, pp.73-74, 2001.
- [4] 양재모, “메일어드레스를 사칭한 스팸메일의 규제에 관한 소고”, 인터넷법률 제19호, p.130, 2003.
- [5] 김문중, “스팸메일-정보인가 법적규율의 대상인가”, 인터넷연구 제1호, p.449, 2002.
- [6] 김윤명, 정보기술과 디지털법, 진한M&B, p.477, 2005.
- [7] 강달천, “스팸메일의 현황과 문제점”, 시민과변호사, p.17, 2003.
- [8] AIC, Preventing Spam, Alcrime Reduction Matters N.35, 2005, 7.; 신동일,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전자우편의 불

법성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5-12 사이버범죄연구, p.35, 2005.

- [9] 상계논문, pp.39-40 참조.
- [10] McAfee, “Phishing & Pharming”, p.8, 2005.
- [11] 이응용 외, “피싱위협 및 대응방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주간 기술동향 통권 1237호, pp.2-3, 2006.
- [12] 윤용석, 전계논문, p.25.
- [13] 최명규, “인터넷상 음란물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부경대논문집 제5호, p.132, 신동일, 전계논문, p.71, 2000.
- [14] 김윤명, 전계서, p.498.
- [15] 박해봉 외, “스팸메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시민과 변호사, pp.21-22, 2003.
- [16] 김상겸, “현행 스팸규제 법·제도 정비방향”, 스팸규제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p.31, 2003.